

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------	-----	---------

신고인	상호	한글		사업자등록번호	
		영문			
	성명 (대표자)	한글		생년월일	
		영문			
	사업장 소재지			(전화번호:)	

신 고 내 용

수입 고형연료 제품 제조업체	상호(영문)		국제사업자등록번호 (DUNS-No.)	
	사업장 소재지			
	① 제조공정			

수입 예정 연월일	국내 하역항	제조국(수출국) 및 경유국

수입 고형연료제품 종류(품목)	②	③	④ 운반계획		공급계획		
	HSK No. (10자리)	수입량 (톤)	운반자	운반 종류	업체명	사용시설 종류	공급량 (톤)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
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환경관서의 장 귀하

(뒤쪽)

첨부서류	1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(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) 2. 고품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품연료제품의 수입·운반·보관·공급·처리 계획서 가. 고품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(제조국·제조업체) 및 공급량(공급업체) 나. 고품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(전수방역 계획의 경우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품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은 제외하며,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품연료제품 중 비성형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150℃ 이상으로 1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밀봉 포장했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제외한다) 다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품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라. 고품연료제품의 수입·운반·보관·공급·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- ① 수입하려는 고품연료제품이 무엇을 원료로 무슨 시설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조되는지를 간략히 적습니다.
- ②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(HSK No.: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)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.
- ③ 수입계약서 등에 따른 수입량을 적습니다.
- ④ 운반자란에는 자가 운반의 경우에는 "자가"로 적고, 위탁 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으며, 운반종류란에는 운송수단의 종류(선박, 항공기, 트럭/컨테이너, 탱크로리, 기타)를 적습니다.

처리 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